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6년 08월 28일

우아2동장인
전주시 덕진구
우아2동장인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김 *석	김 *석 1969-11-07	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아중3길 (우아동2가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6-08-13